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9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. 04. 30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·감독과 함께 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안 제17조제5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의무를 제출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안 제17조제5항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,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”로 수정함.(안 제17조제5항)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5항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,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
고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 구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<u>사 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</u>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<u>서울특별시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 구 지원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u>사 업 계획서, 사업 결과 및 정산서</u>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에 제 출하고, 이를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</u>----- -----</p>	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 구 지원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</u>-----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중 “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”를 “사업 계획서, 사업 결과 및 정산서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지구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부터 <u>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</u> 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<u>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지구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u>사업 계획서, 사업 결과 및 정</u> <u>산서</u>----- ----<u>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</u> <u>원회에 제출</u>-----</p>